



	위치	1/1/24	1/1/25	1/1/26
뉴욕주 최저 임금	뉴욕시	\$16.00	\$16.50	\$17.00
	Long Island 및 Westchester	\$16.00	\$16.50	\$17.00
	뉴욕주의 그 외 지역	\$15.00	\$15.50	\$16.00

## 2024년 1월 1일 발효:

### 임금 및 초과근무

외국인 비자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농장 근로자는 이제 일주일에 56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한 정규 임금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YS 노동부에 문의하십시오(877-466-9757 또는 웹사이트 [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labor.ny.gov) | 노동부 (ny.gov)).

## 2020년 1월 1일 발효:

### 쉬는 날

고용주는 매주 최소 1일(24시간 연속)의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쉬는 날을 사전에 지정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가능하면 휴일이 전통적인 종교 예배일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초과근무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농장 근로자는 쉬는 날에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고용주는 매주 근무한 시간과 일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YS 노동부에 문의하십시오(877-466-9757 또는 [www.labor.ny.gov/FarmLabor](http://www.labor.ny.gov/FarmLabor)).

### 실업 보험

특정 조건 하에서 농장 고용주와 농장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실업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H-2A 외국인 게스트 근로자는 실업 보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YS 노동부의 실업보험 고용주 핫라인(Unemployment Insurance Employer Hotline)에 888-899-881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산재 보상

농장 고용주, 소유주 및 운영자는 연간 급여와 상관없이 직원에게 산재 보상 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고용주는 의무적인 근로자의 보상 통지 준수 포스터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상에 대한 통지를 받은 농장 노동 계약자, 조장 및 감독자는 부상이 발생한 농장의 고용주,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고용주가 근로자의 보상 청구 양식을 요청하는 농장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보상 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877-632-4996 또는 [wcb.ny.gov](http://wcb.ny.gov)).\*

## 장애 보험 및 유급 가족 휴가

농장 고용주, 소유주 및 운영자는 유자격 농장 근로자에게 뉴욕의 장애 연금(DB) 및 유급 가족 휴가(PFL) 보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PFL 직원 자격 및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오프아웃 면제에 대한 정보는

**PaidFamilyLeave.ny.gov**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고용주는 DB 또는 PFL 청구 양식을 요청하는 직원을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844-337-6303**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산재 보상, 장애 연금 및 유급 가족 휴가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고용주 리소스에 대해서는 **www.wcb.ny.gov/farmtoolkit**에서 제공되는 산재 보상 위원회의 농장 고용주를 위한 툴킷을 참조하십시오.

## 단결권

농장 근로자들은 노동 조직을 구성, 가입 또는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단결권과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한 단체교섭권을 보유합니다. 여기에는 단체교섭 또는 기타 상호원조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간섭, 구속 또는 강요가 없는 연합 활동(고용 조건 개선 또는 직원의 단체 이해관계와 관련된 모든 활동, 토론 또는 회의)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농장 근로자는 파업권이 없습니다. 농장 근로자는 노동 조건과 단결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 해고를 포함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518-457-6410번으로 공공 직원 관계 위원회(Public Employee Relations Board)에 문의하거나 **perb.ny.gov**를 참조하십시오.

## 2021년 1월 1일 발효:

### 이주 농장 근로자 주거 시설 허가

고용주는 뉴욕주 보건부(또는 현지 카운티 보건부)에 연락하여 한 명 이상의 이주 근로자가 차지할 농장 또는 가공 근로자 합숙소 운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18-402-7600** 번으로 뉴욕시 노동부에 문의하십시오.

**www.health.ny.gov/contact/contact\_information/**에서 현지 카운티 보건부를 찾으십시오.